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구 미 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 푸드플랜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법인이 사용할 사무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개요

- (1) 위 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 (2) 대 상 : 선산출장소 3층 사무실(71.4m²)
- (3) 사용주체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 (4) 감면기간 : 2021. 9. 16. ~ 2024. 9. 15.(3년)
- (5) 사용면적 : 71.4m²

나. 감면 필요성

- (1) 구미시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 지역 생산-지역소비 추진을 통해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구미시의 출연기관으로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이 되며, 구미시 푸드플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미시의 지원이 필요

3. 사업 내용

가.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개요

- (1) 설립형태 : 비영리 재단법인(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출연기관)
- (2) 설립목적 : 구미시 푸드플랜 실행 중간지원 조직
- (3) 출연규모 : 3억원(기본재산 1억원, 운영재산 2억원) ※ 21년도 편성 출연금
- (4) 사 무 소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선산출장소 3층)
- (5) 주요사업 : 농가조직화, 유통경로 다각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 먹거리 사업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수행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9. 12. 30.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 2020. 6. 30.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2021. 4. 29. : 재단법인 발기인총회
- 2021. 6. 21.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과 설립허가
- 2021. 7. : 재단법인 설립 등기
- 2021. 8. : 재단법인 직원(경력직) 채용
- 2021. 10. 5. : 직원 임용 및 근무개시
- 2021. 10월중 : 출범식 개최예정
- 2021. 10월말 : 농가조직화 구축 및 직매장 1호점 개장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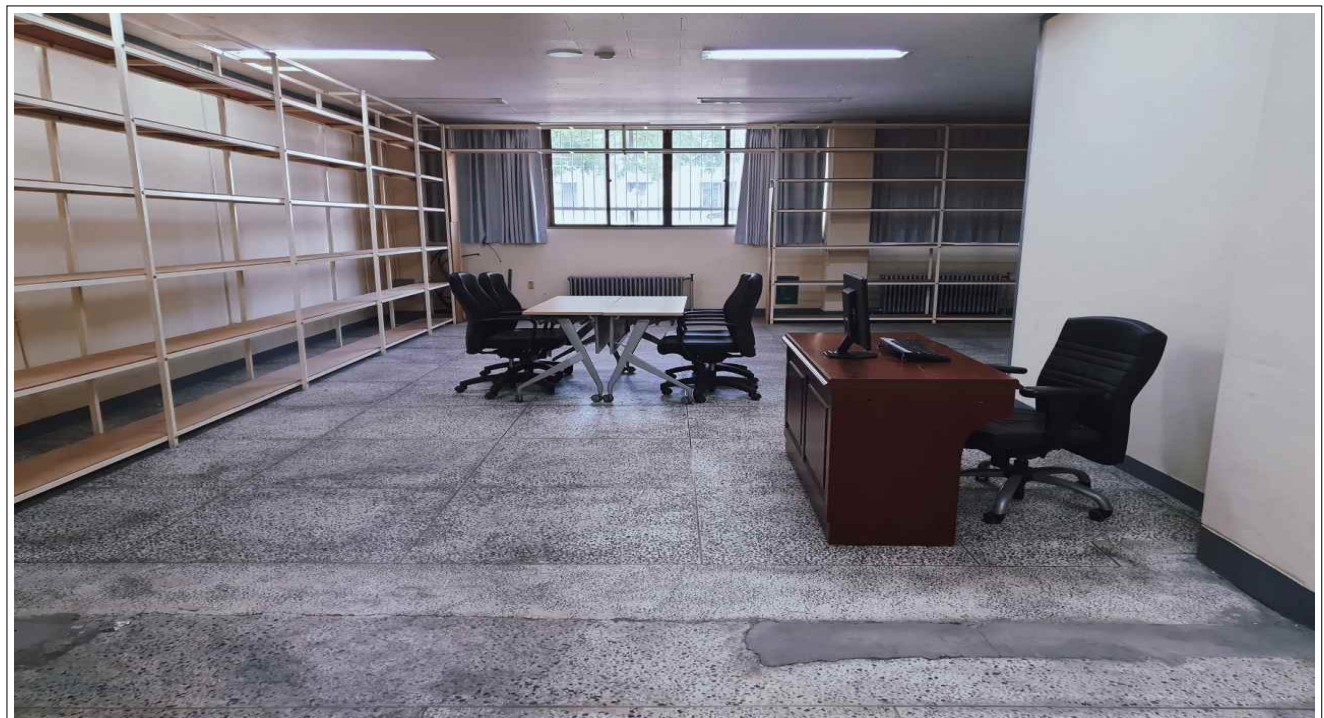
다. 기대효과

- (1) 구미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
- (2)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4호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 5항 2의2호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생산·소비·안전·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에 대해 통합관리를 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구미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농산물의 유통경로 다각화 등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연간 임대료 : 3,545,870원)

- 계산식 = 전용 단위면적 × *월사용료 × 사용개월 수

$$= 71.4\text{m}^2 \times 4,138\text{원} \times 12\text{월}$$

$$= 3,545,870\text{원/년}$$

*월 사용료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를 적용

4. 작성자

- 유통특작과 먹거리정책계장 최재용(5921)

- 유통특작과 주무관 김주성(5922)

소 관 부 서		유통특작과
입 안 자	과 장	정 인 철
	담 당	최 재 용
	담 당 자	김 주 성 (480-5922)